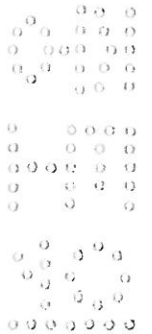


재 결 서

수 용 재 결 :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
(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)

2018. 2. 8.



중앙토지수용위원회

재 결 서

사 건 번 호 : 17수용1025호

사 업 명 :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[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]

사업시행자 : 진도군수

소 유 자 : 김도현 외 8명

관 계 인 : 굿옥선주식회사 외 4명

재 결 일 : 2018. 2. 8.

이 건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.

주 문

1.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,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, 손실보상금은 금86,992,850원으로 한다.
2. 수용의 개시일은 2018. 3. 28.로 한다.

이 유

1.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

가. 경 위

사업시행자는 이 건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[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]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

국토해양부장관(현 국토교통부장관)으로부터 개발구역의 지정을 받고,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709호, 2012. 10. 19.)를 하였다.

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.

나. 적법성 판단

「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」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·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,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12조3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의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.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소유자의 주장

재결신청서류 열람기간 중에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살펴보면,

1) 박정우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5번지 상 컨테이너는 본인 소유의 것이므로 본인에게 보상하여 줄 것을,

2) 박죽자는 이 건 사업으로 분할된 토지 연동리 산171-5번지를 기존 토지인 같은 리 산171-1번지와 합병하여 줄 것을,

3) 박죽자는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.

나. 사업시행자의 의견

재결신청서류 열람기간 중에 제시한 위 소유자 등의 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

1) 수용재결에서 산정된 보상금은 관할 법원에 공탁할 계획이다.

2) 이 건 공익사업으로 분할된 연동리 산171-5번지와 기존의 산171-1번지를 합병해 줄 계획이다.

3) 보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적정가격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○ ○ ○ ○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3. 위원회의 판단

가. 박정우가 전남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5번지 상 컨테이너는 본인 소유의 것이므로 본인에게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

○ ○ ○ ○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법 제50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②손실의 보상 ③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으로 되어 있다.

같은 리 1225번지 상 컨테이너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법 제50조에 따른 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.

나. 박죽자가 이 건 사업으로 분할된 토지 연동리 산171-5번지를 기존 토지인 같은 리 산171-1번지와 합병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

법 제50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②손실의 보상 ③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으로 되어 있다.

사업시행자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인 같은 리 산171-5번지와 기존 토지인 산171-1번지를 합병해 줄 계획이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법 제50조에 따른 우리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.

다. 당사자간에 다투고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 살펴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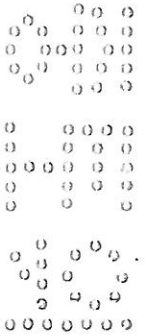
토지에 대한 보상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,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,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, 생산자 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·형상·환경·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.

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·입목·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(이하 "건축물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,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, 우리 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

중 앙 토 지 수 용 위 원 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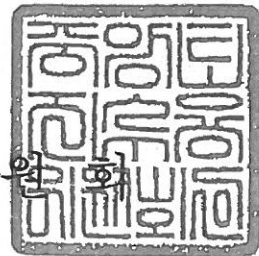
위 원 장	이 승 훈
직무대행	
위 원	김 재 호
위 원	이 현 수
위 원	이 형 석
위 원	김 원 보
위 원	강 팔 문
위 원	김 대 희
위 원	권 용 복



위 정본입니다.

2018. 2. 8

중 앙 토 지 수 용 위



간사 김 철

